

17세기 입후의 요건과 첩자계승

고민정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조선후기사 전공
koh71@kangwon.ac.kr

- I. 머리말
- II. 입후의 원칙
- III. 특별한 입후의 성립
- IV. 첩자계승권의 침탈과 승적(承嫡)
- V. 첩자계승과 입후의 갈등
- VI. 맺음말

I. 머리말

17세기 이후 성리학적 종법 질서가 조선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적장자 중심으로 가족구조가 재편되고, 적장자로 이어지는 가문의 계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입후(立後)가 주목되었다. 입후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후사를 세운다’는 뜻이지만, 『경국대전(經國大典)』 「입후(立後)조(條)에서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자가 관(官)에 고하여 동종(同宗)의 아들을 후사로 삼는다’고¹⁾ 정의한 것과 같이 후사를 세우기 위하여 의리상 부자(父子)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한 측면이 크다.

본래 부자관계는 생물학적 근거로 형성되는 것인데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부자관계를 만드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입후가 자연의 질서와 부합하기 위해서는 천명의 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국왕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보았다.²⁾ 즉, 입후의 원칙은 법전에 규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국왕의 허가를 얻어야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입후는 이미 조선후기의 독특한 사회 현상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선시대 가족제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일환으로 입후에 대한 기초연구가 진행된 이후³⁾ 사회적⁴⁾·예학적⁵⁾·제도적 측면의 조명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는 조선초기

1) 『경국대전』 「立後」. “嫡妾俱無子者, 告官, 立同宗支子爲後. ○兩家父同命立之, 父沒則母告官, 尊屬與兄弟及孫, 不相爲後.”

2) 『千一錄』 「譜弊」. “凡繼後之法, 雖至親叔侄, 與受明白, 必也入啓禮斜, 而正其天倫者. 蓋以人之生也, 賦其性命於天地, 受其氣血於父母, 而既不得父生母育, 則人君乃是天地也父母也, 故所以稟命於君上而後, 正其天倫.”

3)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研究』(서울大學校出版部, 1983);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研究』(一志社, 1996).

4) 허원영, 「한말 한 중가의 입후(立後)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들: 東萊鄭氏 鄭蘭宗 중가의 고문서 자료를 통한 재구성」, 『사회와 역사』 75(2007); 권내현, 「조선후기 입양의 시점과 범위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62(2008); 권내현, 「조선후기 입양의 확산 추이와 수용 양상」, 『역사와 현실』 73(2009); 박종천, 「조선 후기 유교적 가족질서의 확산과 의례적 양상 - 입후(立後)와 입양(入養)을 중심으로 -」, 『퇴계학논집』 132(2012); 한상우, 「조선후기 양반층의 立後 양상과 전략적 繼子 선택」, 『조선시대사학보』 73(2015).

5) 김남이, 「18세기 喪·祭禮 실천과 宗統의 이상: 星湖 李瀾의 承重·立後 논의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5(2009); 박종천, 「의례적 계승인가, 사회적 구휼인가?: 조선후기 입후와 입양에 대한 다산의 논의」, 『다산학』 16(2010); 박종천, 「조선 후기 성호학파의 입후설과 친족의식」, 『민족문화연구』 65(2014).

가계계승법제의 형성·운영을 고찰하면서 입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⁶⁾ 조선전기의 다양한 입양 형태를 고찰하면서 입후를 조명한 연구도 있었다.⁷⁾ 그리고 예조의 입후 기록인 『계후등록』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입후의 실상을 고찰한 연구가 있었다.⁸⁾ 이러한 연구는 입후가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전제 아래 시기적으로 입후의 양상이 달리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경국대전』 「입후」조에서 규정한 입후의 요건, 즉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자’의 해석에 대해서는 상이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첫째, 조선전기 입후제를 고찰한 연구에서는 16세기 이후 입후 논의가 혈연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첩자가 있어도 입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⁹⁾ 둘째, 첩자의 사회적 지위를 고찰한 연구에서는 첩자가 봉사권을 이어받아도 다른 적자손에 의한 침탈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선말기에 승적(承嫡) 관행이 생겼다고 보거나¹⁰⁾ 조선후기의 첩자 또는 계후자에 의한 가계계승은 해당 가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한다.¹¹⁾ 즉, 전자는 16세기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차별된 첩자에 의한 가계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며, 후자는 첩자의 가계계승은 조선후기에도 지속되었고 오히려 제도적 보호를 받는 데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양자의 시각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17세기 이후 입후의 확산과 더불어 첩자의 가계계승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첩자가 있는데도 입후가 가능했다면 그 수준이 어디까지 가능하였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첩자의 가계계승이 가격(家格)을 낮춘다는 이유로, 첩자의 자리를 계후자가 모두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조가 17-19세기에 편찬한 입후 사례 모음집인 “계후등록”

6) 鄭肯植, 『朝鮮初期 祭祀承繼法제의 成立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6).

7) 박경,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혜안, 2011).

8) 고민정, 『朝鮮後期 家系繼承 研究: 立後制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b).

9) 정궁식, 「16세기 첩자의 제사 승계권」, 『사회와 역사』 53(1998), 170-181쪽; 피터슨, 마크 A. 저, 김혜정 역, 『儒敎社會의 創出: 조선중기 상속제와 입양제의 변화』(일조각, 2000), 192-193쪽.

10) 박병호, 「이조말엽의 승적관행과 생전양자: 현행법과 관련하여」, 『법학』 3(1962).

11) 배재홍, 『조선후기 서얼 허통과 신분 지위의 변동』,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5).

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경국대전』 「입후」 조에서 규정한 입후의 요건이 조선후기에 어디까지 유효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국가가 첩자가 있는 가문의 입후를 허가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조선후기 첩자의 가계계승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계승자 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어떠한 이유로 나타난 것이며 또한 이에 개입한 국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입후의 원칙

17세기 이후 조선사회에 입후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입후의 확산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첫째는 이제껏 소홀하게 여겨져온 가문의 계승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후사를 잇기 위해 입후를 선택한 것이고, 둘째는 적장자로의 계승이 불가능할 때 이용했던 형망제급 또는 첩자계승과 같은 방법이 입후로 대체된 것이다. 첫째 경우는 족보에서 ‘무후(無後)’가 점차 사라지는 현상과 관계가 있으며¹²⁾, 둘째 경우는 조정에서 특정 가문의 봉사권을 논할 때 혈통론보다 명분론을 강조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에서¹³⁾ 확인할 수 있다.

가문의 계승자 선정은 해당 가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강상(綱常)의 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제도를 통해 이를 관리하려고 하였다. 국가차원에서 입후가 처음 거론된 것은 1434년 적장자를 대신하여 첩자가 승중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였다.¹⁴⁾ 이로부터 3년 뒤 후사가 없는 자에 한해서 동종의 지자를 입후할 수 있게 한 입후제의 대강이 마련되었다.¹⁵⁾ 그리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수정된 후¹⁶⁾ 입후 요건은 ‘적처와 첩에게 모두

12)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研究』(一志社, 1996).

13) 지두환, 「朝鮮前期 宗法制度 理解科程」, 『태동고전연구』 1(1985); 鄭青植, 앞의 논문.

14) 『世宗實錄』 16年(1434) 4月 16日(癸亥).

15) 『世宗實錄』 19年(1437) 6月 3日(辛酉).

아들이 없는 자, 입후 절차는 ‘관에 고하는 것’, 입후 대상은 ‘동종 지자로 규정되어 『경국대전』 「입후」조에 수록되었다.

이 중에서 입후 요건이 17세기에도 유효하게 작용하였는가의 여부는 계후입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계후입안은 예조에서 발급하는 입후증 명서인데 여기에는 입후 절차에 따른 문서의 행이(行移)과정이 전사되어 있어 각 사례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은 1658년 안동 고성이씨 탐동증가에서 발급받은 계후입안의 내용 중에서 입후 요건에 관한 부분만 정리한 것이다.

故忠義衛 李華의 처 김씨의 所志: 남편이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이 사망하여¹⁷⁾

忠義衛 李墳의 所志: 同姓 六寸兄 李華가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이 사망하여¹⁸⁾

김씨의 戚答: 남편이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이 사망하여¹⁹⁾

李墳의 條目: 동성 육촌 형 李華가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이 사망하여²⁰⁾

김씨의 문장 유학 金演과 李墳의 문장 유학 李敬培의 조목: 이화가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이 사망하여²¹⁾

예조: 大典 立後條에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자는 官에 고하여 동종 지자를 후사로 삼는다고 하였으므로²²⁾

고 충의위(故忠義衛) 이화(李華)의 처 김씨는 남편이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이 사망하여 남편의 육촌 동생 충의위 이분(李蕢)의 둘째 아들을 입후하려고 소지를 예조에 올렸다. 예조는 생부 이분의 소지(所志)

16) 『成宗實錄』 15年(1484) 5月 26日(壬子).

17) 1658년 李華의 예조입안. “順治十五年(1658)三月日, 禮曹立案, 右立案爲繼後事, 曹啓目, 節呈故忠義衛李華妻金氏所志內, 家翁嫡妾俱無子身死, 家翁同姓六寸第二蕢第二子昌, 欲爲繼後, 兩家同議呈狀, 依他立後事, 所志.”

18) 1658년 李華의 예조입안. “忠義衛李蕢所志內, 同姓六寸兄李華嫡妾俱無子身死, 矣第二子昌, 欲爲繼後, 兩家同議呈狀, 依他立後事, 所志.”

19) 1658년 李華의 예조입안. “金氏緘答內, 家翁嫡妾俱無子身死, 家翁同姓六寸第二子昌, 欲爲繼後, 兩家同議呈狀的實.”

20) 1658년 李華의 예조입안. “李蕢條目內, 同姓六寸兄李華嫡妾俱無子身事, 矣第二子昌, 欲爲繼後, 兩家同議呈狀的實.”

21) 1658년 李華의 예조입안 “金氏門長幼學金演, 李蕢門長幼學李敬培等條目內, 李華嫡妾俱無子身死, 金氏亦, 家翁同姓六寸第二蕢第二子昌, 欲爲繼後.”

22) 1658년 李華의 예조입안 “所志及緘答條目據相考, 則大典立後條, 嫡妾俱無子者, 告官立同宗支子爲後. 註兩家父同命立之, 父沒則母告官事, 載錄, 向前李昌乙, 李華繼後何如?”

와 조목(條目), 양모 김씨의 함답(咸答), 양쪽 가문 증인의 조목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경국대전』 「입후」조에 따라 적법한 것이 인정되므로 입후하는 것이 알맞다는 소견을 올렸다. 즉, 예조는 가문에서 입후를 요청하면 「입후」조에 의거하여 양부의 첩자 유무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후」조의 효력은 예조가 후일의 증빙을 목적으로 편찬한 『계후등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계후등록』은 31책으로 17-19세기의 1만 4,977건에 해당하는 입후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계후입안이 개별 가문의 입후 사례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계후등록』은 핵심 정보를 축약하였기 때문에 전체의 경향을 확인하는 데 용이하다. 『계후등록』에서 「입후」조를 준수하고 있는 사례는 전체의 약 90%에 해당되며 시기적으로도 고루 분포되어 있다.²³⁾

아래의 내용은 1618년 『계후등록』에 수록된 것인데, 여기에서도 양부의 적처와 첩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후등록 제1. 만력 46년(1618).

- 一. 예조계목에, 철원의 전참봉 李進이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서 그의 형 暹의 둘째 아들 東白을 계후하는 것을 族 許廷闇과 동의·정장하여 계후. 만력 46년 10월 4일 우승지 臣 金 담당. 계대로 할 것.²⁴⁾
- 一. 예조계목에, 맹산의 통정 方德恭의 처 趙氏가 남편의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서 사촌형 德潤의 둘째 아들 貽壽를 族 方德溫·方德良와 동의하여 계후. 만력 46년 10월 4일 우승지 臣 金 담당. 계대로 할 것.²⁵⁾

(※밑줄: 필자)

첫 번째 사례는 철원의 전참봉(前參奉) 이진(李進)이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서 친형 이섬(李暹)의 둘째 아들을 입후하기 위한 것으로,

23) 고민정, 앞의 논문(2014b).

24) 『繼後謄錄』 2. “繼後謄錄第一. 萬曆四十六年(1618). 一曹啓日, 鐵原前參奉李進, 嫡妾俱無子, 以其同生兄暹次子東白, 繼後事, 族許廷闇同議呈狀繼後. 萬曆四十六年十月初四日. 右承旨臣金次知. 啓依允.”

25) 『繼後謄錄』 2. “一. 曹啓日, 孟山通政方德恭妻趙氏, 家翁嫡妾俱無子, 同姓四寸兄德潤次子貽壽, 族方德溫·方德良同議繼後. 萬曆四十六年(1618)十月初四日. 右承旨臣金次知. 啓依允.”

문족 허정은(許廷闇)을 증인으로 세웠다. 두 번째 사례는 맹산의 통정(通政) 방덕공(方德恭)의 후사를 위해 그의 처 조씨가 남편의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문족 방덕온(方德溫)과 방덕량(方德良)이 증인을 세워 남편 사촌 형의 둘째 아들을 입후하려고 하였다.

앞서 제시한 예시는 3사례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은 계후입안과 『계후등록』의 수많은 사례 중의 일부라는 점에서, 「입후」조에 규정된 입후 요건은 17세기 사례에서도 꾸준히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특별한 입후의 성립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국대전』 「입후」조는 첩자가 있는 자의 입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초기 일부일처제의 확립과 서얼금고법의 시행 및 신분제의 재편에 따라 첩자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고 관직 진출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일부 가문에서는 첩자에 의한 가계계승을 기피하려는 흐름이 있었다.²⁶⁾ 따라서 적자가 없고 첩자만 있는 경우에도 입후하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런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입후제도는 「입후」조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 가문이 첩자를 두고 계후자를 세워 국가의 허가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왕의 특별한 허가가 있으면 「입후」조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입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예조판서(禮曹判書) 홍섬(洪瀾)이 근래 남편의 사망 후 처가 첩자 대신 남편의 조카를 입후하려 한 경우 특별히 허가했던 사례가 많았음을 언급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²⁷⁾

표1은 『계후등록』 중에 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입후를 허가받은 사례를 모아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1671년(현종 12) 좌의정 정치화(鄭致和, 1609-1677)가 상소하여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1602-1673)의 아들이자 효종의 사위인 정재륜(鄭載崙, 1648-1723)을 입후한 것이다. 정치화는 적자가 없어 형의

26) 배재홍, 앞의 논문.

27) 『明宗實錄』 11年(1556) 2月 19日(戊申)

표1-첩자가 있었으나 입후가 허가된 사례

번호	연도	칭원자	양부	계후자	첩자 유무	비고
1	1671	左議政 鄭致和	鄭致和	三寸姪 鄭載崙	친첩자 有	領議政 鄭光弼 후손
2	1679	副護軍 李檮	李元煥	李基萬	친첩자 有	先賢, 清白吏 후손
3	1686	故左尹 金錫翼의 처尹氏	金錫翼	三寸姪 金道泳	친첩자 有	淸風府院君 金佑明 이들
4	1688	故郡守 張楨의 처 鄭氏	張楨	七寸姪 張震煥	첩자 有	新豐府院君 張維 후손

아들 정재륜을 어릴 때부터 양육하였는데, 1656년 정재륜이 부마로 간택되면서²⁸⁾ 입후할 시기를 놓쳤다.²⁹⁾ 그는 이미 60세를 넘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첩자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전의 입후요건에 맞지 않지만 국왕의 허가를 받아 입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³⁰⁾

두 번째 사례는 1679년(숙종 5) 부호군(副護軍) 이면(李檮)이 상언하여 고부사(故府使) 이원환(李元煥)의 후사로 이운환(李允煥)의 아들 이기만(李基萬)을 세운 것이다. 이면 등은 고조 증참판(贈參判) 이목(李穆, 1471-1498)과 증조 감사(監司) 이세장(李世章)의 후손으로, 고부사 이원환이 첩자만 있어서 이운환의 둘째 아들 이기만을 입후하고자 하였다.³¹⁾ 예조는 이목이 선현(先賢)으로 충현서원에 배향되었고 이세장은 청백리로 현록되었으니 그 지손과 일족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친첩자로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다.³²⁾ 또한 국가에서 선현과 청백리를 대우하는 것은 여타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³³⁾

세 번째 사례는 1686년(숙종 12) 고 좌윤(故左尹) 김석익(金錫翼, ?-1686)의 후사로 김석연(金錫衍)의 아들 김도영(金道泳)을 입후한 것이다. 청풍

28) 『孝宗實錄』 7年(1656) 8月 29日(甲辰)

29) 『別繼後謄錄』 2(1671) “議政府左議政臣鄭致和上疏, 伏以臣不幸嫡無子女, 兄子載崙, 自幼時收養, 而未及呈官立後, 載崙適被駙馬選擇, 故不敢循例啓下, 以至於今矣.”

30) 『別繼後謄錄』 2(1671) “嫡妾俱無子女者立後, 雖是法文, 臣之賤產一兒稚弱, 難望其成長, 若不趁今繼後, 終必爲絕祀之歸. 茲敢冒陳危迫之懇, 仰宸宸之下, 伏乞聖慈俯賜矜察, 特令該曹, 依願施行, 不勝幸其事.”

31) 『別繼後謄錄』 3(1679). “觀此上言內辭緣, 則李檮等以其高祖贈參判穆, 其曾祖監司世章之奉祀孫, 故府使元煥只有妾子, 嫡妾無嗣之故, 欲以元煥生時, 所定允煥之第二子基萬立後爲白良結.”

32) 『別繼後謄錄』 3(1679). “穆以先賢廟食于忠賢書院, 世章又以清白吏懸錄, 則其子孫及一族之不欲使賤妾子奉祀者, 情理固然.”

33) 『別繼後謄錄』 3. “且朝家之軫念先賢及清白吏者, 亦當與凡人無後者, 有間是白乎矣, 事係法外, 該曹不敢擅便, 上裁何如? 康熙十八年(1679)十月十七日. 左副承旨臣李晶次知. 啓依願立後爲良如教.”

부원군 김우명의 아들이며 현종의 처남인 김석익이 갑자기 사망한 뒤³⁴⁾ 숙종은 김석익의 후사를 세우려는 전교를 내렸다.³⁵⁾ 김석익의 가문에서는 그가 살아 있을 때 동생 김석연의 아들 김도영을 입후하고자 했으나 친척자가 있는 까닭에 법전에 구애되어 관에 고하지 못하고 후일을 기다려 변통하려고 하였다.³⁶⁾ 그런데 김석익이 죽고 속히 후사를 세우려는 전교가 내려지자 가문이 원하던 대로 친척자 대신 계후자를 세워 국왕의 허가를 받았다.³⁷⁾

네 번째 사례는 1688년(숙종 14) 고 군수(故郡守) 장훤(張愼)의 후사로 전 현감(前縣監) 장설(張稅)의 아들 장진환(張進煥)을 입후한 것이다. 이 일은 영의정 김수흥이 입시하여 신평부원군(新豐府院君) 장유(張維, 1587-1638)의 손자 장훤이 사망한 후 가문이 계승자를 지정하지 못한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숙종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장훤이 사망한 후 그의 가문에서는 첩자가 있어서 입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 당시 사족 중에는 첩자가 있는 것을 숨기고 국가로부터 입후를 받기도 하였으나, 장훤의 가문에서는 첩자가 없다고 조정을 속여 입후할 수 없다고 보았다.³⁸⁾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김수흥은 신평부원군 장유의 후사는 국가에서 대우하는 도리가 있고 또한 미약한 첩자로 그 봉사를 주관하게 할 수 없으니 법전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입후를 허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였다.³⁹⁾ 이에 따라 장훤의 가문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의 육촌 동생 장설의 둘째 아들 장진환을 입후하여 후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⁴⁰⁾

34) 『肅宗實錄』 12年(1686) 2月 7日(辛卯); 『肅宗實錄補闕正誤』 12年(1686) 2月 7日(辛卯)

35) 『別繼後贈錄』 4(1686). “傳曰, 摠戎使金錫翼遽爾卒逝, 且無後事, 事甚矜惻, 其令該曹, 問于本家 趁即繼後事, 稟處可也.”

36) 『別繼後贈錄』 4(1686). “故左尹金錫翼妻貞夫人尹氏呈單內, 家翁在世之日, 嫡無繼嗣, 以同生弟錫衍第二子道泳, 欲爲立後, 而賤畜有子之故, 拘於法典, 未能經告于官, 以歿日後變通之至矣.”

37) 『別繼後贈錄』 4(1686). “奄罹終天之痛, 主祀無托, 尤切罔極之情, 不意聖明曲軫亡臣之無後, 特令該曹問于本家稟處, 茲敢仰陳其委折, 伏願舉此啓聞, 以家翁同生弟錫衍第二子道泳 定爲立後云. 金錫翼立後事, 出於矜惻繼絕之至意, 似當依傳教, 特爲繼後, 而既有妾子, 則乃是格外, 本曹不敢擅便, 上裁何如? 傳曰特爲繼後, 以此立案成給.”

38) 『別繼後贈錄』 5(1688). “今十二月初三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 領議政金所啓, 故新豐府院君張維奉祀孫愼身故後, 無嫡子當爲立後, 而第以法典言之, 則嫡妾俱無子然後, 方許立後. 故近來士夫家立後者, 雖有妾子爲其立後之地, 多有以嫡妾俱無子, 呈狀該曹, 而今此愼則與他人有異, 雖無嫡子既有妾子, 不敢欺隱朝家而呈狀云.”

39) 『別繼後贈錄』 5(1688). “新豐府院君後嗣, 朝家宜有軫念之道, 而亦不可以其微弱妾子, 使主其祀, 雖非法典, 此則特許立後, 似可矣. 上曰特許立後可也事, 命下矣.”

이 사례들은 모두 17세기에 일어난 일들로 「입후」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국왕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 가문이 원하는 대로 입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특별한 허가는 해당 가문이 가진 정치·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사례에서, 양부 정치화는 입후 당시 정1품 좌의정에 있었고 그의 형 생부인 정태화도 정1품 영의정이었다. 또한 이들은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의 5대손이고 우의정 정유길(鄭惟吉)의 증손이며, 좌의정 정창연(鄭昌衍)의 손자이고 지돈녕부사 정광성(鄭廣成)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대대로 국가의 최고위직을 역임한 명가세족의 일원이었다.⁴¹⁾ 이와 같은 경우, 즉 2품 이상의 관직에 오른 자는 예조를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후사와 관련된 사항을 상소할 수 있었고 또한 재신(宰臣)의 봉사손은 그 봉사의 특별함을 인정받아 예외적인 입후를 허가한 관례가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⁴²⁾ 이 가문의 정치적 위치는 입후 성립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두 번째 사례에서 양부 이원환의 입후는 그의 관력보다는 1498년 무오사화에 연루되었다가 중종 대에 복관되어 충현서원에 배향된 이목과 명종 대에 청백리로 녹신된 이세장의 봉사손이라는 점⁴³⁾이 크게 작용하였다. 예조가 이 가문의 후사에 대하여 선현과 청백리의 봉사는 특별히 대우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쳤고, 결국 이러한 논리에 따라 입후가 가능할 수 있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례는 현종의 장인이며 숙종의 외조부인 청풍부원군 김우명 후손 가문과, 효종의 장인이며 현종의 외조부인 신평부원군 장유의 후손 가문의 후사와 관계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왕실의 외가라는 점 때문에 국가에서는 해당 가문이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가문의 상황을 논의하여 입후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었던 것이다.

한편 네 번째 사례에서 장훤의 후사를 논하는 과정을 보면, 17세기

40) 『別繼後膳錄』 5(1688). “故郡守張檀妻鄭氏呈單內, 家翁張檀以新豐府院君奉祀孫, 嫡無子身死乙仍子, 家翁同姓六寸弟前縣監張祝第二子震煥立後事, 門中旣已完定, 上項震煥依榻前定奪, 特爲家翁繼後事呈單爲白有置. 依聖教以此立案成給何如? 康熙二十七年十二月初七日. 同副承旨臣徐文裕次知. 啓依允.”

41) 『宣祖修正實錄』 21年(1588) 9月 1日(辛亥); 『孝宗實錄』 5年(1654) 4月 22日(辛巳); 『顯宗實錄』 14年(1673) 10月 8日(甲辰); 『肅宗實錄』 3年(1677) 9月 29日(癸卯); 『國朝人物考』 「鄭廣成神道碑銘」(李景奭); 『國朝人物考』 「鄭萬和神道碑銘」(宋時烈)

42) 고민정, 「17세기 장자의 계후와 그 특권적 성격」, 『태동고전연구』 31(2013b).

43) 『國朝人物考』 「李穆墓誌銘」(張維); 『明宗實錄』 12年(1557) 12月 21日(庚子).

사족가문에서는 첩자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꾸며 입후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8-19세기 조정에서 첩자의 허통을 논하는 과정을 보아도⁴⁴⁾ 이 같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만약 적처에게 아들이 없고 첩에게 아들이 있는 자가 법을 속이고 입후한 사실이 밝혀지면 죄를 처벌하고 파양하는 것이 정례(定例)였다.⁴⁵⁾ 그러므로 이를 조선후기에 일반화된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특수한 사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이상을 종합하면 조선의 입후제는 『경국대전』 「입후」조가 운영의 원칙이었으며 이는 17세기 이후에도 효력을 발휘하였다. 다만 일부에서는 입후 요건과 다르게 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후하여 가문의 계승자를 지정하려 하였다.⁴⁶⁾ 이 가운데 대대로 고위 관직을 지낸 명문세가, 성현의 후손, 왕실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가문의 경우는 다른 가문보다 비교적 쉽게 국가로부터 입후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V. 첩자계승권의 침탈과 승적(承嫡)

앞서 살펴본 대로 입후는 『경국대전』 「입후」조를 따랐으나 첩자의 계승은 『경국대전』 「봉사(奉祀)」조(條)에 의거하여 시행되었다. 「봉사」조에는 만약 적장자에게 후사가 없으면 중자(衆子)가, 중자가 후사가 없으면 첩자가 봉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첩자의 가계계승은 적서의 차별이 확립되면서부터 논란이 되었다.⁴⁷⁾ 1434년 중자의 후사가 없어 차기 계승자를 지정하는 방법을

44) 『英祖實錄』 48年(1772) 6月 1日 乙丑; 『英祖實錄』 50年(1774) 4月 17日(己亥); 『正祖實錄』 2年(1778) 8月 1日(戊午); 『純祖實錄』 23年(1823) 9月 9日(甲戌).

45) 『別繼後譜錄』 4(1685). “雖以士夫家論之, 嫡無子而妾有子者, 冒法繼後爲白有可如, 若或因事見露, 則科罪罷養, 已有定例.”

46) 최근 족보를 분석한 연구에서 養家의 사회적 위상이 우월한 경우 의도적으로 계후자를 선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상우, 앞의 논문.

47)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적자와 첩자를 차별한 이유는 조선초 왕위계승에서 첩자를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이상백, 「庶孽禁錮始末」, 『한국 문화사 연구 논고』, 을유문화사, 1984; 이종일, 『朝鮮時代 庶孽身分變動史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첩자의 관직진출을 막아 양반이 관직을 독점하기 위한 목적(이태진, 「庶孽差待考: 鮮初 妾子 限品敍用制의 성립 과정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7, 1965)에서 이루어졌다.

논의했을 때 첩자승증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고⁴⁸⁾ 1470년 신효창의 후사 문제⁴⁹⁾, 1473년 조방림의 후사 문제⁵⁰⁾ 등도 이 때문에 발생한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었다.⁵¹⁾ 이 과정에서 ‘후사가 없다(無後)’는 것은 첩자를 제외한 채 적자의 유무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첩자봉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강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⁵²⁾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적장자에게 첩자만 있는 경우에 동생의 아들을 후사로 삼기 원하는 자는 허가하고 자신과 첩자가 별도의 일지(一支)가 되고자 하는 것도 허가한다는 보충조항이 마련되었다.⁵³⁾ 또한 1553년 남조원의 후사 문제를 논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첩자가 있어도 국왕의 특별한 허가로 입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⁵⁴⁾ 첩자의 계승권이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⁵⁵⁾

특히 처음에는 첩자가 가문을 계승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나 차후 이것이 문족 간의 갈등으로 번져 소송에 이른 사례가 있다. 선친과 조부 등을 70여 년간 봉사한 보인(保人) 권사호(權士豪)는 1638년 얼자손이라는 이유로 계승권을 위협받았다. 적자손 권덕유(權德裕) 등이 적모(嫡母) 곽씨(郭氏)의 사망 이후 증조부의 유서를 근거로 권사호의 계승권을 빼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미 4차례나 계속된 소송에서 국가는 계승권의 안정성을 이유로 권사호의 권리를 인정하였으나, 적자손들이 이에 복종하지 않고 위력으로 봉사재산과 기물을 탈취하였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었다.⁵⁶⁾ 또 다른 예로 문신갑(文信甲)은 1649년 얼자와 적자 간의 분쟁으로 인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6~7대

48) 『世宗實錄』 16年(1434) 4月 16日(癸亥).

49) 『成宗實錄』 1年(1470) 6月 24日(辛未); 『成宗實錄』 10年(1479) 8月 11日 甲午; 『成宗實錄』 10年(1479) 8月 21日(甲辰); 『成宗實錄』 10年(1479) 8月 22日(乙巳).

50) 『成宗實錄』 4年(1473) 10月 1日(己未); 『成宗實錄』 4年(1473) 10月 28日(丙戌).

51) 지두환, 앞의 논문; 정궁식, 앞의 논문.

52) 『成宗實錄』 4年(1473) 10月 1日(己未).

53) 『經國大典』 「奉祀」. “嫡長子只有妻子, 願以弟之子爲後者聽, 欲自與妻子別爲一支, 則亦聽.”

54) 『明宗實錄』 8年(1553) 9月 9日(壬子).

55) 조선중기의 사회적 변화를 강조하는 연구에서는 첩자계승은 16세기까지만 유효하다고 보기도 한다. 정궁식, 앞의 논문, 170-181쪽; 피터슨, 마크 A. 저, 김혜정 역, 앞의 책, 192-193쪽.

56) 『別繼後膳錄』 1(1638). “權士豪雖是孽孫, 其父祖父以上奉祀, 已過七十餘年, 而其族類等, 別無雜言爲白如可, 嫡母郭氏身死之後, 權德裕等, 敢生欲奪之計, 托稱曾祖遺書, 公然立訟, 極爲不當叱分不喻, 士豪四度得伸, 而德裕等, 猶以威力奪取, 仍執爲白臥乎所, 加于無理.”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분쟁이 일어난 시점과 약 200년 떨어져 있다.⁵⁷⁾ 즉, 이러한 모습은 계승자를 결정하는 당시 첩자에 의한 가계계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자손이 첩자손의 계승권을 침탈하여 첩자손에 의한 계승이 연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 가문 내에서 첩자의 계승권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 다른 경우에 갈등으로 나타났다. 신경수(申景洙)와 그의 모친은 첩자 신치(申治)로 승중하게 하려고 문기(文記)를 성급하였다.⁵⁸⁾ 그러나 신경수의 처 류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조카 신황(申滉)을 입후하려고 입계(入啓)하였다.⁵⁹⁾ 이 사건은 가문의 계승자를 지정하는 데에 각각의 입장이 달라서 발생한 것으로, 계승자를 결정할 시점에 그 결정권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즉, 신경수는 혈연을 중시하여 첩자로 가문을 계승하게 하려고 한 반면에 류씨는 명분을 중시하여 계후자에 의한 계승을 원한 것이다.

이 문제는 1650년 신경수의 첩 박조이가 상언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류씨에게는 첫째, 첩자가 있음을 밝히지 않고 입후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법전의 본의를 어긴 죄, 둘째, 남편과 시어머니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 가문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의 뜻대로 첩자에 의한 계승이 인정되었고 계후자 신황의 입후는 과제되는 데에 이르렀다.⁶⁰⁾

신경수의 계승 문제는 처 류씨가 입후할 때 첩자의 유무를 거짓으로 밝힌 것과 가문에서 결정한 계승자를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갈등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가문에서 첩자 대신 계후자로 후사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봉사」조에 의하여 입후가 허락될 수 있었다. 1647년 고 학생(故學生) 김대기(金大器)의 처 이씨는 남편이 적장자이나 첩자만

57) 『別繼後譜錄』 1(1649). “文信甲上言, 粘連啓下是白有亦, 向前文信甲亦, 以孀嫡相訟伸冤事, 兩邊俱爲捉致, 明正處置爲白良結, 有此陳訴爲白有臥乎所, 事在六七代之前云, 將至二百年之久, 則久遠之事, 到今相訟未知其由.”

58) 承重은 조손 간 계승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그 어원과 용례를 추적하여 계승을 의미하는 용어인 것이 밝혀졌다. 고민정, 「17-18세기 嫡孫承重에 관한 일고찰」, 『조선시대사학보』 67(2013a).

59) 『別繼後譜錄』 1(1650). “申景洙母子成給申治文記, 則以申治爲承重之意, 牢不可破爲白去乙, 其後柳氏諉以嫡妾俱無子, 誣呈本曹, 入啓繼後爲白有臥乎所.”

60) 『別繼後譜錄』 1(1650). “柳氏之其夫死後, 遂背其夫之言, 別取遠族之子爲嗣者, 非但有乖於法典本意, 柳氏之不遵其姑其夫之言, 難免亂家之罪, 似當變通是白在果, 繼後啓下之事, 自下不敢擅便, 上裁何如? [...] 依聖教以申治承重奉祀爲白乎矣, 申滉乙良罷繼爲白遣, 追後所出立案爰周次, 以上送事.”

있기 때문에 「봉사」조에 따라 동생의 아들을 입후하기 바란다고 하며 남편 사촌 동생의 셋째 아들을 입후하기를 청하였다.⁶¹⁾ 예조에서는 이와 관계된 김대기의 처 이씨의 소지와 공함, 양모 고 내금위(故內禁衛) 김대임(金大任)의 처 권씨(權氏)의 소지와 공함, 증인 이효민(李孝閔)과 유학 김익련(金益鍊) 등의 조목을 검토한 후 입후에 문제가 없음을 국왕에게 보고하여 입후가 성립되었다.⁶²⁾

그런데 「봉사」조에는 첩자만 있는 적장자가 입후하려고 할 때는 동생의 아들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었고, 1553년 남조원(南調元)의 후사 문제로 성립된 수교에도 동생의 아들이 아니면 후사로 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⁶³⁾ 그러나 김대기의 입후에서 보이듯이 동생의 아들이 아닌 사촌의 아들까지도 입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허용 대상의 폭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첩자에 의한 가계계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거나, 가문 내에서 첩자 봉사를 결정하여도 이를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 갈등이 생기거나, 첩자 대신 입후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첩자는 가문을 계승할 권리를 침탈당하거나 그 후보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문에서 첩자를 계승자로 지정한 후에 적자손(嫡子孫)이 그 계승권을 침탈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계후자가 국가로부터 계후입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첩자가 가문을 계승할 경우 승적입안(承嫡立案)을 받아 그 권리를 보호받으려 하였다.

표2는 『계후등록』 중에서 국가에 첩자의 승적을 요청한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모두 3건이 이에 해당된다.

첫 번째 사례는 1651년 박득광(朴得光)이 승적의 권리를 입증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국가에 입안을 요청한 것이다. 박득광은 박상준(朴尙俊)

61) 『別繼後謄錄』 1(1647). “故學金大器妻李氏所志內, 女矣家翁亦, 先世奉祀嫡長, 以女矣身無子, 只有妾子, 法典內嫡長子只有妾子, 願以弟之子爲後者聽, 亦載錄. 女矣家翁同姓四寸弟大任第三子益燦, 欲爲繼後, 兩家同議呈狀依法立後事.”

62) 『別繼後謄錄』 1(1647). “所志公緘, 及故內禁衛金大任妻權氏所志, 及公緘李氏同姓四寸甥幼學李孝閔金大任同姓五寸姪幼學金益鍊等, 條目據相考, 則大典奉祀條註, 嫡長子只有妾子, 願以弟之子爲後者聽亦載錄. 立後條註, 兩家父同命立之, 父歿則母告官事載錄. 向前金益燦乙, 金大器繼後何如? 啓依允事.”

63) 『受教輯錄』 「立後」. “嫡長子有妾子, 非同生弟之子, 勿許爲後.”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 분과법전연구반, 『수교집록』(청년사, 2001), 138쪽 원문 및 번역 참조.

표2-첩자의 승적을 요청한 사례

번호	연도	청원자	피계승자	계승자	허가 여부
1	1651	朴得光	朴尙俊	朴得光	허가
2	1677	李壽翼	李忠國	李英萬	허가
3	1748	故學生 趙奎 妻 朴氏	趙奎	趙廷武	허가

의 친생자이고 박상준은 선조와 인빈김씨 사이에 태어난 정혜옹주의 외증손이다. 박상준은 박득광에게 승중하게 하였으나 박득광이 친첩자인 까닭에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갈등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다. 예조는 박득광이 후사가 없는 자와 차이가 있고 아직 문중에서의 갈등은 없지만 지나치게 염려하여 예방하려는 걱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았다.⁶⁴⁾

두 번째 사례는 1677년 이천에 거주한 이수익(李壽翼)이 육촌 형 이충국(李忠國)을 위하여 승적입안을 요청한 것이다. 이충국은 적자가 없고 첩자만 있었기 때문에 문중에서 상의하여 첩자 이영만으로 승적봉사하게 하였다.⁶⁵⁾

세 번째 사례는 1748년 고 학생(故學生) 조규(趙奎)의 처 박씨가 첩자 조정무(趙廷武)의 승적을 위해 입안을 요청한 것이다. 조규는 임종 직전에 첩자 조정무에게 승중봉사하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고, 처 이씨는 남편의 유언을 따라 신주방제와 봉사를 하게 하였다.⁶⁶⁾ 그리고 첩자가 승중하는 것은 비록 법전에 있지만 인륜의 대사에 해당되므로 예조에서 승인해줄 것을 상언하였다.⁶⁷⁾ 이 두 사례는 「봉사」조와 「입후」조를 준수한 것이었

64) 『別繼後譜錄』 1(1651). “朴尙俊以惠貞翁主外曾孫，傳係奉祀，則尙俊之子得光，雖是孽產，應爲承重，與無後者有異，門中似無爭奪之理，實出於過慮豫防之患是白置。依其願，使之仍爲奉祀何如？啓依允。”

65) 『別繼後譜錄』 2. “利川居李壽翼，[···] 則其矣六寸兄忠國嫡無子女，門中相議，以其妾子英萬承嫡奉祀爲白良結，有此陳訴爲白有臥乎所，大典奉祀條，若嫡長子無後，則妾子奉祀亦爲白有置，依法例施行何如？康熙十六年(1677)四月初二日。右承旨臣睦昌明次知。啓依允。”

66) 『別繼後譜錄』 9(1748). “故學生趙奎妻朴氏上言據，曹啓日觀此上言，則其矣亡夫，以奉祀之人，不幸無嫡子，而只有庶子矣。臨死之際，指庶子廷武而言曰，此雖庶子，既是血屬，且法典嫡妾俱無子，然後方許繼後，吾既有己出，則以此兒承重奉祀，法禮當然，必以家事傳於此兒云。故家夫身死之後，一依亡夫之言，以庶子廷武，旁題奉祀是白如乎。”

67) 『別繼後譜錄』 9(1748). “庶子承重，雖載法文，此是人家之大事，不可私自斷定，特令該曹，依法典以廷武承重立案成給爲白良結，有此呼籲爲白有臥乎所，大典奉祀條，嫡長子無後則衆子，衆子無後則妾子奉祀云。立案條，嫡妾俱無子，告官立後事，載錄爲白有置。上項趙奎既有妾子，而又有臨歿時承重之言，則以其庶子廷武，承嫡奉祀，法禮當然，依願

기 때문에 예조에서는 승적입안을 발급해주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첩자계승은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였으나 적서를 차별하는 또 다른 법제가 생기면서 사실상 첩자의 가계계승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정 가문에서는 첩자의 존재를 숨기거나 가능한 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입후하려고 하였다. 또한 첩자의 가계계승이 이미 이루어졌어도 적자손에 의한 계승권 침탈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여전히 첩자로 가문을 계승하게 하려는 흐름이 지속되었고 이 경우에는 차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승적입안을 발급받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V. 첩자계승과 입후의 갈등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적자가 없고 첩자만 있는 경우, 가문을 계승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첩자가 가문을 계승하게 하는 방법 외에도 입후라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첩자계승과 입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 할 때 가문 내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문족 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표3은 『계후등록』과 승적입안을 토대로 계승자의 선택과정에서 생긴 갈등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1652년 평해에 거주한 황석우(黃石友) 등이 황중윤(黃中允)의 양자 황석래(黃石來)가 승중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시작되었다. 황중윤은 해월헌(海月軒) 황여일(黃汝一)의 장자인데 적자가 없어서 동생 황중헌(黃中憲)의 아들 황석래를 양자로 칭하여 혼서(婚書)에도 이와 같이 기재하였고, 그 양모의 장례에도 복상(服喪)하게 하였다. 황여일이 사망한 뒤 처 이씨는 아들 황중윤의 생전 뜻에 따라 황석래를 계후자로 삼고 국가의 허가를 받았다.⁶⁸⁾ 그러나 황중윤의

立案成給何如? 乾隆十三年(1748)九月十九日.”

68) 『別繼後膳錄』 1(1652). “黃中允孽子石友石心等, 因其上言, 中允養子石來, 應爲承祀與否, 本道查覈 辭緣詳細考見, 則中允以黃汝一之長子, 既無嫡子, 當其生存時, 以其弟中憲之子石來, 稱爲養子, 至於婚書中, 以子石來書填, 使其孽子石友書寫, 又令服其養母之

표3-첩자계승과 입후의 갈등 사례

번호	연도	청원자	피계승자	주요 내용	판결
1	1652	黃石友 등	黃中允	계후자 黃石來를 입후하였으나 양부 사후 첩자 黃石友 등이 반발	계후자 승소
2	1655	李元俊	李哲擁	형의 아들 李燁을 입후하였으나 50여 년이 지난 후 천첩자 李夢男이 송사하여 분쟁	계후자 승소
3	1681	校生 呂從和	呂燭	오촌 조카 呂孝孟을 입후하였다가 파계하 고 첩자 呂孝曄으로 승증하게 하여 분쟁	상세한 조사 지시
4	1685	喪人 孫枝萬	孫大善	천첩자 孫枝萬과 수양자 孫寬의 쟁적	천첩자 승소
5	1691	幼學 趙璇	韓啓業	첩자 韓湏로 승증하려 했으나 동생 韓就業 의 장자 韓必煌이 계후자라고 주장	상세한 조사 지시
6	1758	前縣監 具學萬	具學萬	육촌 형의 둘째 아들 具喆을 입후하려다가 첩자 具守謹으로 승증하게 하여 분쟁	첩자 승소

천첩자 황석우와 황석심(黃石心)이 이러한 결정에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송사에 이르게 되었다. 예조는 이미 황석래의 계후입안이 적법하게 발급되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천첩자가 적조모(嫡祖母)와 적삼촌(嫡三寸)을 포함한 패륜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고 보아, 적조모를 포함하고 승증을 탈취하려고 했던 죄목을 들어 이들을 처벌하였다.⁶⁹⁾

두 번째 사례는 1655년 이철용(李哲擁)의 천첩자 이몽남(李夢男) 등이 고 생원(故生員) 이엽(李燁)의 계후자 자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여 송사를 일으켜, 이엽의 아들 이원준(李元俊)이 그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이엽은 삼촌 이철용에게 입후되어 예조입안을 받았고 양부모의 장례를 주관한 것이 이미 50여 년이 되었다. 그런데 천첩자 이몽남 등은 이엽을 입후하였다가 파계하였으므로 계승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원준은 이철용이 사망한 후 이몽남의 모친인 첩 예이(禮伊)가 계후입안을 비롯한 일련의 문서를 탈취하였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으나 입후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였다.⁷⁰⁾ 그런데 이 사건은 조사과정에서 천첩자

喪事段，彼此所招，一樣無異是白去等，黃中允生前，欲令石來繼後之意，據此可知是白乎跡，黃汝一之妻李氏尚存，願以其介子之子，入承長子之後，仍爲傳係宗祀，呈上言，該曹覆啓得蒙依願施行云，判下受出立案。”

69) 『別繼後臚錄』1(1652). “中允之婢妾子石友等，不有其嫡祖母與嫡三寸等，完定之事，節節毀咎醜詆，萬端構捏之怪不一而足傷令，悖倫莫此尤甚爲白去乎，上項黃石來其伯叔中允繼後事段，依前啓下立案施行爲白乎跡，石友石心等構陷其嫡祖母，謀奪承重之罪乙良，令本道照律處置後，啓聞之意，回移何如? 啓依允.”

70) 『別繼後臚錄』1(1655). “李元俊上言內，節該臣矣父故生員燁爲三寸叔哲擁繼後，依法呈

이몽남 등이 탈적을 위해 하급관리와 부화뇌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엽의 입후는 선조 대의 예조등록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였으나 파양의 정황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국가는 문서의 적실에 따라 이엽의 계후자 자격을 인정해주었다.⁷¹⁾

세 번째 사례는 1681년 여형(呂炯)의 후사를 둘러싸고 오촌 조카 여효맹(呂孝孟)과 첩자 여효평(呂孝平)이 분쟁을 일으킨 것이다. 여형은 첩자만 있어서 오촌 조카 여효맹을 입후하고자 양육하였으나 그의 성품이 폐악하여 계후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파양하였다. 그리고 첩자로 승중할 것을 유언하였으므로, 문족들은 조부 사후에 첩자 여효평으로 승중하게 하였다. 그런데 여효맹이 위조된 계후입안을 들고 갑자기 나타나 양자라고 칭하며 소상이 끝난 후부터 복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첩자 여효평은 여효맹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관에 호소하였으나, 관에서는 여효맹의 말만 듣고 오히려 여효평의 행동을 문제 삼아 다섯 차례 형신하였다.⁷²⁾ 예조는 이 상언의 내용대로 여형이 여효맹을 파양했고 첩자승중을 유언했다면, 여효맹의 행동은 근거가 없고 탈적인 것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관에서 첩자 여효평을 처벌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아 별도의 관리를 파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조사하게 하였다.⁷³⁾

네 번째 사례는 1685년 손대선(孫大善)의 계승 문제를 두고 친첩자 손지만(孫枝萬)과 수양자 손관(孫寬)이 분쟁을 일으킨 것이다. 손지만은 그가 친첩자였으나 부친 손대선이 생존했을 때 이미 속량(贖良)·허통(許

禮曹啓下，已服養父母喪，今過五十餘年之後良沙，養祖賤妾子夢男夢希等，敢生奪嫡之計，臣矣父乙罷繼樣以，誣飾起訟爲白臥乎事段，其矣母禮伊亦，養祖賤妾以三年未盡之內，潛逃之時，臣矣父繼後立案，及其他文記，盡爲偷去乙仍子，辨明無路。”

71) 『別繼後臚錄』 1(1655) “夢希謀欲奪嫡誣飾上言，下吏符同，欺罔回啓之罪乙良，[···] 前日李夢希上言覆啓時，罷養文書，不在本曹，[···] 大概李燁萬曆庚子年爲繼後於哲雍，本曹臚錄明白如此是白去等，凡訟之勝負，只從文書之的實而已。”

72) 『別繼後臚錄』 3(1681). “校生呂從和，[···] 則其矣祖炯燭妾俱無子女，有妾子二人，其矣祖父欲以五寸姪孝孟爲後，率養家內，而孝孟賦性悖惡，罷繼之後，妾子中承事，明有遺言是白乎等以。其矣祖父身死後，門族依其遺言，妾子孝平書於傍題，孝孟以叛去之人，終不顧喪是白如乎，其後孝孟圖出立案，仍爲養子，過小祥始爲服喪，[···] 推官偏聽其言，其矣父嚴刑五次。”

73) 『別繼後臚錄』 3(1681). “炯之生時，果有罷養，則孝孟之圖出立案，過小祥後，服喪之說，極爲無據劣不喻，因其遺言，使其妾子承重，則奪嫡樣，構成罪案，至於累次刑訊，誠爲冤抑，而事係爭嫡，必有其間曲折，不可以一邊之言，輕以處置，令本道別定剛明官一處，下覈具由啓聞後，稟處。”

通)되었으므로 계후자의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상업에 종사하여 강계 지역에 들어가 있을 때 부친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손관이 자칭 양자라 하며 이미 상복을 입고 있었고 그가 상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였다.⁷⁴⁾ 반대로 손관은 손대선이 자신을 후사로 삼을 뜻이 있었기 때문에 혼서(婚書)에서 양부라고 하였고, 손대선 사후에 그 처가 수양입안을 받게 해주었으므로 계후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았다.⁷⁵⁾ 예조는 손대선이 손지만을 속량·허통하였다는 점과 첩자가 있으면 입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손지만을 계승자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손대선이 손관을 양자로 여긴 것은 인정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손관이 손대선을 계승할 권리는 없다고 보았다.⁷⁶⁾

다섯 번째 사례는 1691년 한계업(韓啓業)의 후사 문제로 일어난 분쟁이다. 한계업은 적자가 없어서 첩자 한일(韓溢)을 후사로 정하였다. 그런데 한계업이 사망한 직후, 동생 한취업(韓就業)이 자신의 장자 한필황(韓必煌)을 한계업의 후사로 정하고 한필황에게 가사와 전답을 독점하게 하였다. 그러나 첩자 한일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위 유학 조선(趙璇)이 상언하여 이 일이 알려지게 되었다.⁷⁷⁾ 예조는 한필황이 양자라고 하더라도 계후입안을 성급하지 않아서 효력이 없고, 또한 그가 가사와 전민을 점유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이유를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⁷⁸⁾

여섯 번째 사례는 1758년 개성에 거주한 전 현감(前縣監) 구학만(具學萬)이 첩자 구수근(具守謹)으로 승중하기 위하여 국가에 승적입안을 요청한 것이다. 그가 이러한 상언을 하게 된 것은 조카 구철(具喆)이 계후자라고

74) 『別繼後臚錄』 4(1685). “頃日開城府喪人孫枝萬亦, 以大善賤妾之子, 其矣父生時, 既已贖良許通爲白有如乎, 因商板入往江界時, 其父身死, 聞喪還家, 則大善姪子孫寬, 自稱大善之養子, 己服其喪, 不許枝萬之主喪.”

75) 『別繼後臚錄』 4(1685). “孫大善生時, 嘗有以姪子寬爲後之意故, 孫寬婚書中以養父書填爲白有於, 大善死後, 大善之妻追出收養立案.”

76) 『別繼後臚錄』 4(1685). “所法典內, 凡繼後者, 嫡妾俱無子女, 乃許繼後是白去等, 孫大善不過以一常漢, 生時賤妾之子枝萬贖良許通, 則其意可知, 而大善死後, 其姪孫寬冒稱養子, 任自服喪, 事極無據.”

77) 『別繼後臚錄』 5(1691). “其矣妻祖啓業, 自是支子之長子嫡無子女, 只有妾子溢, 以溢定後, 啓業死於戊戌, 入棺之後, 其弟就業之長子必煌, 始乃發喪, 家舍田民一併都執, 其矣妻夫韓溢生即欲舉呈請治, 而此事皆出於必煌之父就業.”

78) 『別繼後臚錄』 5(1691). “雖稱養子, 而未有立案是如, 家舍田民使之出給, 則自負形勢, 不遵官令之事, 非本曹所知之事, 令本道監司, 明查處置.”

주장하며 분쟁을 일으킨 것을 막고 첩자 구수근이 계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구학만은 슬하에 자식이 없어 육촌 형의 둘째 아들 구철을 입후하기 위한 목적에서 양육하며 그의 성품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아직 50세 미만이어서 계후입안의 신청을 미루고 있었는데, 그동안 첩자 3명이 연이어 태어나자 조카 구철을 생가로 돌려보냈던 것 같다.⁷⁹⁾

이후 구학만의 처가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려 할 때 조카 구철이 나타나 자칭 계후자라고 하면서 상주 노릇을 하려고 하였다. 구학만은 구철이 법적으로 입후된 것이 아니므로 그런 자격이 없다고 하였으나, 구철은 그 슬하에서 양육된 것이 여러 해이므로 상복을 입어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례를 주관하였다. 장례가 끝난 후에 구학만은 구철에게 일정한 재산을 별급하고 그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구철은 이후에도 집안일에 끊임없이 간여하며 이익을 챙기려 하였다.⁸⁰⁾ 이 같은 상황은 구학만이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이다.⁸¹⁾ 예조는 구학만이 구철을 법적으로 입후한 사실이 없으므로 파계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첩자의 승적은 「봉사」조에 따라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 첩자 구수만의 승적을 인정해주었다.⁸²⁾

위의 사례 중에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17세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모두 첩자가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는 가문에서 첩자 대신 계후자를 계승자로 선택하

79) 1758년 具學萬의 承嫡立案. “乾隆二十三年(1758)二月日. 禮曹立案. 右立案爲陞嫡事, 節達下教, 開城府居, 前縣監臣具學萬, 駕前上言內, 右謹啓, 臣矣段臣矣身, 敢將私悞冒萬死, 呼籲於清蹕之下爲白齊. 臣矣身以兩世奉祀之人, 正室之無子姓, 而幸有側室子三人, 具爲成長, 則先祀之托 無復所慮, 而但血屬未有之前, 臣矣身同姓六寸兄應萬以其第二子喆, 托於臣矣身, 願爲立後, 而臣矣身伊時年未滿五十, 非但有產生之望, 而有不慳之心, 故果不禮斜, 姑爲養育, 以觀其善否矣.”

80) 1758년 具學萬의 承嫡立案. “頃於臣矣身妻喪時, 喆遽忽發喪, 自托以所後子, 故臣矣身以法不當如是之意, 挽而止之, 渠以爲養育膝下, 已有年所, 其在恩義, 豈不蒙喪, 而以伸情禮乎云爾. 故奔遑之中, 不能牢拒, 任其所欲矣. 一自蒙喪之後, 擅自家事, 專欲利己, 別給家舍田民外, 其所責應 不爲不多, 而猶有不足之心, 時或惹鬧, 多有不順之事.”

81) 1758년 具學萬의 承嫡立案. “若此而早不變通, 則前頭之患, 未知何境, 而當初既無禮斜之事, 又有己出三人, 則其立後一款, 非所可論乙仍于, 應萬之子喆身乙, 去乙亥年分, 呈禮曹, 已爲歸本家是白乎所, 臣矣身側室所生長子守謹, 特令該曹, 依法典承嫡事, 伏蒙天恩.”

82) 1758년 具學萬의 承嫡立案. “當初具學萬, 既無以喆禮斜之事, 又有子三人, 則喆之罷繼別無所請, 而其側室長子守謹段, 依法典許令承嫡何如? [···] 達依準教事是去有等以, 向前具學萬側室長子守謹陞嫡爲遣, 合行立案者.”

자 첩자가 이에 반발하여 분쟁이 일어났다. 이 경우는 계후입안을 통해 계후자가 입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첩자의 계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첩자에 의한 분쟁이 계승자를 선정한 직후가 아니라 피계승자가 사망한 후 또는 5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친생자인 첩자의 존재는 지속적으로 계후자의 계승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세 번째 사례는 애초에 입후로 가문을 계승하게 하려다가 이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다. 첩자의 주장에 따르면, 입후한 후 계후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어 파악하였는데도 계후자가 계승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는 18세기에 발생한 여섯 번째 사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구학만이 양육하던 조카 대신 새로 태어난 첩자에게 계승권을 물려주려 했기 때문에 생긴 갈등과 같은 종류이다. 이러한 경우 국가에서는 사실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피계승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세 번째 사례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고, 여섯 번째 사례는 피계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 두 사례는 처음에 계승방법으로 입후를 생각하였다가 이후에 마음을 바꾸어 첩자로 계승하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 같은 현상은 17세기 임척(林滌)이 계승자를 선택할 때 첩자는 버려두고 현부(賢否)와 애증(愛憎)을 따져 입후한다는 병폐를 지적한 것과⁸³⁾ 정반대 현상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그 목적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례는 피계승자가 사망한 후 계승자를 선정해야 할 때 계후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네 번째 사례는 수양자의 존재 때문에 첩자의 계승권이 위협받았고, 다섯 번째 사례는 피계승자의 동생이 계승자 지정에 간여하면서 적자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은 첩자의 계승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첩자는 그 존재만으로 가문을 계승할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것이다.

83) 『別繼後臚錄』 3(1681). “備邊司甘結乃林滌上疏內, [···] 凡人家無子而立後者, 不遵國法, [···] 而令人或爲婦言所撓捨己出姜子, 而子他人者有之, 稱承重立後者, 法當以次長子之子爲後, 而今則不然, 擇其人賢否愛憎越等而有立後者, 傷倫敗紀之風.”

이렇듯 첩자를 두고 발생한 가문 내의 갈등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첩자가 계후자의 계승에 반발한 경우이다. 둘째는 실제 입후에는 이르지 못한 입후후보자가 첩자 계승에 반발한 경우이고, 셋째는 적자손이 신분의 우위를 이용하여 첩자의 계승권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생긴 경우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섯 사례 중에서 계후자의 계승이 인정된 경우가 두 사례, 첩자의 계승이 인정된 경우가 두 사례, 판단이 유보된 경우가 두 사례로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은 첩자계승이 입후로 자연스럽게 대체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수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첩자 또는 계후자 중 한 사람이 계승자가 되더라도 가문 내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할 경우 다른 쪽에 의해 계승권을 위협받을 여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I. 맺음말

이 글은 17세기 첩자계승이 또 다른 계승방법의 하나인 입후와 더불어 어떤 형태로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입후제는 『경국대전』 「입후」조에 의거하여 운영되었는데, 적자와 첩자가 없어야 입후할 수 있게 한 입후 요건은 조선후기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다만 첩자의 정치·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게 되면서 첩자계승 대신 입후를 선택하지는 요구가 있었고, 국가가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입후 요건이 철저히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대로 높은 관직을 지낸 명문세가, 성현의 후손, 왕실의 친인척 등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이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국왕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 첩자계승 대신 입후를 이룰 수 있었다. 또한 『경국대전』 「봉사」조에 따라 첩자만 있는 적장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서 입후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첩자가 있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입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다.

17세기 이후 가문의 계승자로서의 첩자의 위치는 확고하지 못했던 것 같다. 가문을 계승한 첩자가 오랫동안 봉사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적자손이 첩자의 계승권에 문제를 제기하여 갈등이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문 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처음에는 첩자로 가문을 잇게 하려다가 번복하고 계후자를 세우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첩자의 계승권이 적자손에 의해 침탈되는 현상이 일어나자, 가문을 계승하게 된 첩자는 국가로부터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승적입안을 발급받는 등 계승권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렇게 볼 때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된 입후가 일정 부분 첩자계승의 자리를 대체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첩자만 있는 가문에서 계승자를 선정할 때 입후를 포함시켜 고민한 흔적이 보이며, 첩자 대신 계후자로 가문을 계승하게 한 경우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첩자가 본래의 계승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승자를 선정할 당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가문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문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계승자가 결정된 이후라도 언제든 분쟁으로 확대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첩자계승과 입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검토하면 첫째, 입후한 것에 대한 첩자의 반발이 있었고, 둘째, 수양자 또는 입후후보자를 두고 첩자를 계승자로 세운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그리고 셋째, 적자손이 첩자의 계승권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생긴 반발도 있었다. 첫째 경우는 입후가 확산되는 당시 분위기와 관계된 것이며, 둘째 경우는 가문 내에서 입후하려다가 첩자계승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그리고 셋째 경우는 첩자의 신분적 열세가 가문의 계승에도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결국 입후는 첩자만 있는 가문이 계승방식을 정하려 할 때 또 다른 선택지가 되었다. 즉, 가문의 선택에 따라 첩자계승 또는 입후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갈등이 따랐으므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다. 그리고 첩자계승은 조선후기에도 존재했던 계승방식임에는 틀림없으나, 첩자가 지닌 정치·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오히려 가문 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는 상대적으로 더욱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사료

- 1658년 李華의 禮曹立案(한국국학진흥원 소장).
1758년 具學萬의 承嫡立案(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經國大典』.
『繼後謄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國朝人物考』.
『別繼後謄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受教輯錄』.
『朝鮮王朝實錄』.
『千一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2. 단행본

-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3.
박경,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혜안, 2011.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1996
피터슨, 마크 A. 지, 김혜정 역, 『儒敎社會의 創出: 조선중기 상속제와 입양제의 변화』. 일조각, 2000.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 연구반, 『수교집록』. 청년사, 2001.

3. 학위논문 및 일반논문

- 고민정, 「17-18세기 嫡孫承重에 관한 일고찰」. 『조선시대사학보』 67, 2013a.
_____, 「17세기 장자의 계후와 그 특권적 성격」. 『태동고전연구』 31, 2013b.
_____, 「『繼後謄錄』의 기술방식과 범외계후에 대한 재검토」. 『사학연구』 113, 2014a.
_____, 『朝鮮後期 家系繼承 研究: 立後制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b.
_____, 「조선후기 입후 방식과 계후자의 항렬에 관한 연구」. 『태동고전연구』 34, 2015a.
_____, 「조선후기 입후 절차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117, 2015b.
권내현, 「조선후기 입양의 시점과 범위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62, 2008.
_____, 「조선후기 입양의 확산 추이와 수용 양상」. 『역사와 현실』 73, 2009.
김남이, 「18세기 喪·祭禮 실천과 宗統의 이상: 星湖 李瀾의 承重·立後 논의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5, 2009.
박병호, 「이조말엽의 승적관행과 생전양자: 현행법과 관련하여」. 『법학』 3, 1962.

- 박종천, 「의례적 계승인가, 사회적 구휼인가?: 조선후기 입후와 입양에 대한 다산의 논의」. 『다산학』 16, 2010.
- _____, 「조선 후기 유교적 가족질서의 확산과 의례적 양상 -입후(立後)와 입양(入養)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132, 2012.
- _____, 「조선 후기 성호학파의 입후설과 친족의식」. 『민족문화연구』 65, 2014.
- 배재홍, 『조선후기 서얼 허통과 신분 지위의 변동』.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이상백, 「庶孳禁錮始末」. 『한국 문화사 연구 논고』, 을유문화사, 1984.
- 이종일, 『朝鮮時代 庶孳身分變動史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이태진, 「庶孳差待考: 鮮初 妾子 限品敍用制의 성립 과정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7, 1965.
- 정공식, 「16세기 첩자의 제사 승계권」. 『사회와 역사』 53, 1998.
- 鄭肯植, 『朝鮮初期 祭祀承繼法制의 成立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지두환, 「朝鮮前期 宗法制度 理解科程」. 『태동고전연구』 1, 1985.
-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1996.
- 한상우, 「조선후기 양반층의 立後 양상과 전략적 繼子 선택」. 『조선시대사학보』 73, 2015.
- 허원영, 「한말 한 종가의 입후(立後)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들: 東萊鄭氏 鄭蘭宗 종가의 고문서 자료를 통한 재구성」. 『사회와 역사』 75, 2007.

국 문 요약

이 글은 17세기 첩자계승의 실상이 어떠하며 입후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예조가 편찬한 입후사례모음집인 『계후등록』을 주로 분석하였다.

입후제에서 규정한 입후 요건, 즉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야 입후할 수 있게 한 것은 17세기 이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적서차별로 인해 첩자의 지위가 낮아지게 되면서 첩자계승 대신 입후를 통해 가문을 계승하게 하려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권력의 핵심층에 있었던 이들은 국왕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 입후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한 적장자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입후하게 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첩자가 있어도 가문이 원할 경우 입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적자손이 첩자손의 계승권을 침탈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였다. 첩자손이 계승자가 되어 이미 봉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손이 신분적 우위를 이용하여 이를 빼앗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첩자손은 쟁송을 통해 계승권을 지키려고 하였고, 더 나아가 국가로부터 계승권을 인정받기 위해 승적입안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가문 내의 입후의 선호와 첩자의 계승권 수요가 맞물리면서 계승자 선정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갈등 양상은 첫째, 첩자 대신 입후하여 첩자가 반발한 경우, 둘째, 입후를 고민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첩자계승을 선택하여 입후 후보자가 반발한 경우, 셋째, 첩자계승을 했더라도 적자손이 첩자의 계승권을 뺏으려 한 경우이다.

결국 17세기 입후는 첩자만 있는 가문이 계승방식을 정하려 할 때 하나의 선택지를 넓혀준 것이었다. 따라서 가문의 선택에 따라 첩자계승 또는 입후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갈등이 수반된 측면이 있으므로 가문 내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투고일 2016. 6. 22.

심사일 2016. 8. 3.

게재 확정일 2016. 8. 22.

주제어(keyword) 입후(Adoption), 가계계승(Succession), 계후등록(Gyehu Deungrok, Resgistration Document of Adopted Son), 서얼(SeoEol, a Child by a Concubine), 갈등(conflict)

Adoption Requirements and Succession of Illegitimate Children in the 17th Century

Ko, Min-jung

This paper was written to study effects of spread of adop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on succession of the existing illegitimate children. And for this, 'yehu Deugrok(Registration Document of Adopted Sons)', the collection of adoption examples compiled by Yejo, was used as major historical records.

The adoption requirements specified by the adoption system, that is, the system that adoption is possible if wives and second wives do not have any son continued in effect even after the 17th century. However, there were demands to try to make adoption succeed to families instead of the succession of illegitimate children as they got to be low in position due to legitimate and illegitimate children discrimination. Especially, the people who were power elites tended to adopt sons obtaining special permission from kings. And for primogeniture, there was the aspect that adoption was restrictively done. Therefore, ways to adopt sons were opened if families wanted even though there were illegitimate sons.

There were often the cases that legitimate sons deprived illegitimate sons of their rights of succession. It's because legitimate sons tried to deprive illegitimate sons of their rights of succession by using disparity in social status despite that the illegitimate sons already performed services after they become successors. Accordingly, illegitimate sons tried to keep their rights of succession through disputes and furthermore, they requested the nation to Successor Certificate to get the credit for the rights of succession.

Like this, there were serious conflict situations if the process to select successors cannot reach an understanding as the spread of adoption meshed with illegitimate sons' protection of rights of succession. For the conflict aspects, first, illegitimate sons reacted against adoption. Second, adoption was seriously considered but the succession of illegitimate sons was selected. So candidates of adoption reacted against the succession. Third, legitimate sons tried to deprive illegitimate sons of their rights of succession even though their succession was done.

Eventually, the spread of adop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widened options when families with only illegitimate sons tried to decide succession ways. Therefore, succession of illegitimate sons or adoption could be done according to choices of families. However, there were the aspects which involved conflicts which option was chosen. So it is thought that agreement in families was positively necessary.